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증인 등에 대한 면책결정 효력의 제한 등〉

■ 신장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717호)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은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내용	3
2. 검토의견	8
3. 관계기관 의견	1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신장식의원 등 23인
2. 제 안 일 : 2025. 4. 10.
3. 회 부 일 : 2025. 4.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회생이나 파산의 경우에 채무가 조정되더라도 보증인의 채무나 물상보증인의 책임은 감면되지 않고 있음.

그렇기에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면책되는 경우에도 보증 채무나 물상보증의 책임은 존속되어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까지도 경제적 파탄 상태에 빠지게 됨. 따라서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 대해서도 회생계획이나 파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여야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조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생·파산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채무자에 대한 추심에 관한 금지명령은 두고 있으나 보증인에 대한 추심에 관한 금지명령은 없어 회생절차 중 회생절차에 전념하여야 할 보증인인 대표이사 등의 회생활동에 큰 장애가 된다는 지적도 있음.

따라서 회생계획이나 면책결정이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게도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보증인에 대한 추심 금지명령을 신설하여, 회생·파산 제도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고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을 경제적 파탄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0조 등).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회생계획의 효력이 물상보증인에게 미치도록 하고, 면책결정의 효력이 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에게 미치게 하려는 것임(제250조제2항제2호 삭제, 제567조 삭제, 제625조제3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 ① (생략) ② 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생략) 2. <u>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u>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u><삭제></u>
<u>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u>	<u><삭제></u>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② (생략) ③ <u>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u>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② (현행과 같음) <u><삭제></u>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나아가 개정안은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제외한 권리행사의 중지 및 금지명령 등을 규정함(안 제44조제1항, 안 제45조제1항, 안 제58조제1항제4호 신설, 안 제593조제1항, 안 제600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8조(사건기록의 열람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는 해당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재판의 어느 하나가 있을 때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자가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인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자 외의 이해관계인 가.·나. (생략) 다.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u>중지명령</u> 라.·마. (생략) 2. (생략) ④·⑤ (생략)	제28조(사건기록의 열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1.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u>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u> 라.·마.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4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① ----- -----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경우 그 절차의 신청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신설>

4.·5. (생략)

② (생략)

③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④ (생략)

제45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지(제3호의2의 경우에는 행위의 금지)-----
-----제2호에 의한 절차 또는 제3호의2의
의한 행위의-----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채무자의 보증인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① -----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에-----

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
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
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 ~ ⑧ (생 략)

제48조(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결정이 있는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회생
절차개시신청 및 보전처분신청을 취
하할 수 없다.

1. · 2. (생 략)

3.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명령

4. (생 략)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 회생
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 3. (생 략)

<신 설>

② ~ ⑥ (생 략)

제120조(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① · ② (생 략)

③ 일정한 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하나의 계약(이 항에서
“기본계약”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강제집행 및 채무자
의 보증인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일
체의 행위(소송행위는 제외한다) 등
의-----.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48조(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3. -----중지
명령 또는 금지명령

4. (현행과 같음)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채무자의 보증인에게 변제를 요구
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
를 제외한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0조(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다음 각호의 거래(이 항에서 “적격 금융거래”라고 한다)를 행하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적격금융거래의 종료 및 정산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해지, 취소 및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제4호의 거래는 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채무자가 상대방과 공모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적격금융거래를 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제593조(중지명령) ①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 4. (생략)

<신 설>

중

지명령 · 금지명령 및

1. ~ 4. (현행과 같음)

[illegible]

- 다만, 제4호의2에 의한 행위의 경
우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
를 끼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채무자의 보증인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

5. (생략) ② ~ ⑤ (생략)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 개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② ~ ④ (생략)	<u>행위를 제외한다.</u>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 --- ----- -----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u>채무자의 보증인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 행위를 제외한다.</u>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

2. 검토의견

현행법은 회생계획 및 면책결정의 효력이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여,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은 회생절차개시 또는 면책결정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채권자에게 원래 내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회생계획 및 면책결정의 효력이 보증인 등에게 미치도록 하고,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추심 등 권리행사의 중지 및 금지

명령 등을 규정함으로써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의 경제적 파탄을 예방하고, 특히 중소기업대표의 기업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해당 보증인의 재기를 지원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의 심사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첫째,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는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 보증계약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더욱이 개정안은 회생개시절차의 신청만으로 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변제요구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민사상 인적담보 및 물적담보의 기능을 담당하여 온 이들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이고,

인적담보 등에 의한 대출을 금융기관이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시중에 자금 유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고 보임.

둘째, 현재 개별 법률에서 연대보증인의 재기를 위하여 일정한 공적 채권자들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감면을 인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적으로 보증채무 등의 면책을 규정함으로써 연대보증채무의 감면을 규정한 개별법과의 체계 정

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연대보증채무 감면 입법례>

「중소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인 경우(이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한정한다)에는 중소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기금은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참고로, 독일 등 주요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도산절차를 통해 주채무가 감면되더라도 보증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주요국 입법례>

국가	법률
독일	- <u>도산법 제254조(계획의 일반적 효력)</u> (1) <생략> (2) 공동채무자와 채무자의 <u>보증인에 대한 도산채권자의 권리</u> 및 도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목적물에 대한 이러한 채권자의 권리 또는 그러한 목적물에 관한 가등기에 의한 권리는 <u>도산계획을 통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u> <단서 생략> - <u>제301조(면책의 효과)</u> (1) (생략) (2) 공동채무자와 채무자의 <u>보증인에 대한 도산채권자의 권리</u> 및 그러한 권리의 담보를 위해 기재된 가등기에 의한 채권자의 권리 또는 도산절차에서 별제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에 의한 채권자의 권리는 <u>면책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u> <단서 생략>
일본	- <u>파산법 제253조 ①</u> <생략> ② 면책허가의 결정은 파산채권자가 <u>파산자의 보증인이나 그 밖에 파산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서 갖는 권리</u> 및 파산자 이외의 자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u>영향을 미치지 않는다.</u> ③ ~ ④ <생략> - <u>민사재생법 제177조 ①</u> <생략> ② 재생계획은 별채권자가 보유하는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담보권, 재생채권자가 재생채무자의 <u>보증인 기타 재생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u> 가지는 권리 및 재생채무자 이외의 자가 재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u>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u> - <u>회사갱생법 제203조 ①</u> <생략> ② 갱생계획은 갱생채권자 등이 갱생회사의 <u>보증인 기타 갱생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u> 가지는 권리 및 갱생회사 이외의 자가 갱생채권자 등을 위해 제공한 담보에 <u>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u>
미국	- <u>연방파산법 11 U.S.C. §524 (면책의 효력)</u> (a) ~ (d) <생략> (e) 본 조 (a)(3)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면책은 <u>그 채무에 대한 다른 주체의 책임</u> 또는 그러한 채무를 위한 제3자의 재산에는

	<u>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u> - 연방항소법원 판례 : ① “도산절차에서 주채무자의 면책은 <u>연대보증인(surety)</u>과 같이 채무자와 <u>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co-debtor)</u> 또는 <u>보증인(guarantors)</u>의 책임은 면책되지 않는다”[<i>In re American Hardwoods, Inc.</i>, 885 F.2d 621, 625 (9th Cir.1989)] ② “도산에서의 면책은 채무자의 채무 그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고 ... <중략> ... 채무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며 <u>책임이 있는 다른 주체</u>로부터 추심할 수 있을 것이다”[<i>Matter of Edgeworth</i>, 993 F.2d 51, 53 (5th Cir.1993)]
영국	- 영국 도산법 제281조 (면책의 효력) (1)~(6) <생략> (7) <u>면책은 파산자 이외의 자로 하여금 파산자가 책임을 면한 채무(파산자의 조합원 또는 공동수탁자로서의 책임과 기타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또는 파산자의 보증인 또는 보증인의 성질을 갖는 자로서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u>

자료: 법무부

3.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채권자의 권리에 과도한 제한이 우려되고, 현행법에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증인 등 개인이 별도로 도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보증제도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검토 의견임.

전국은행연합회는 회생절차를 개시한 채무자의 보증인과 그렇지 않은 채무자의 보증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채무자 신용보강의

핵심수단인 보증제도의 약화에 따라 금융소비자 편익 저하, 도덕적 해이 유발 및 자산 건전성 악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신중검토 의견임.

손해보험협회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라는 보증채무의 성질 및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려는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할 수 있고, 보증제도 및 법인회생절차 제도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으며, 채권자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보증인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는 등 이해당사자 간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신중검토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61